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8.4.17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홍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서대문구 홍제동 104-41		
의결번호	2018-08-4	심의결과	조건부보고완료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			
<p>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경관법」 제28조 및 「건축법」 제4조에 의한 경관·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			
〈 건축 분야 〉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계획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107동 경사도는 보행에 무리가 없는 지 검토 바람.</li><li>○ 주차출입구 직상부에 주거세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, 소음·진동에 대한 대책을 검토 바람.</li><li>○ 어린이집 계획 개선 검토 바람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채광·일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위치 변경 및 조정.</li><li>- 남측 계단실 위치 적정여부 및 화장실 이용자를 고려하여 평면을 개선하고 “서울시 어린이집 유니버설디자인”을 적용하여 계획 바람.</li></ul></li><li>○ 택배차량 등 통행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혀 조정 바람.</li><li>○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74㎡A형, 84㎡A·B형, 114㎡A·B형에 대하여 5% 완화 인정함.</li></ul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방재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비상차로 계획은 소방차량 주차 위치에 세대 진입과 회차가 가능하도록 개선 바람. (101동, 102동, 103동 외부에서 각세대 진입하도록 검토)</li><li>○ 지하층 스프링쿨러는 습식인 경우, 겨울철 동파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검토 바람.</li></ul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녹색건축인증 자체 평가서 부문별 가중 점수 계산 확인 바람.</li></ul>			

- 계속 -

2018.4.17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8.4.17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흥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서대문구 흥제동 104-41		
의결번호	2018-08-4	심의결과	조건부보고완료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			
<b>&lt; 건축 분야 &gt;(계속)</b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조경			
○ 대로변 상가 전면부 보행로는 가로공원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특화하여 계획 바람.			
○ 옥상조경 교목 토심은 1.5M 이상 확보하고, 관수계획 검토 바람.			
<b>&lt; 공통사항 &gt;</b>			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.			
가. 녹색건축물 인증 : 우수(그린2)등급 이상			
나.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주거1등급			
다.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3% 적용			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.			
3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 <sub>2</sub>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			
4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			
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			
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			
5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			

2018.4.17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